

2008. 04. 11(금)

제1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전문위원 배성한

<의안번호 제2008 - 11호>

〔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례안 〕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8. 03. 28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8. 03. 31.

2. 제정이유

우리 군 공유재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유 재산 관리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 -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
- 나. 세입 항목을 규정함(안 제2조).
 - 일반회계 전입금, 공유재산의 매각대금, 사용료, 대부료, 변상금 등
- 다. 세출 항목을 규정함(안 제3조).
 - 잡종재산의 취득, 공공청사 및 부지의 취득, 토지합병·분할 수수료 등

라.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함(안 제4조).

마. 예비비를 규정함(안 제5조).

-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및 제4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08. 1. 10 ~ 1. 30) 결과 : 특이 사항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,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안건으로서

-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 세입은 “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공유재산의 매각대금·사용료·대부료·연체료 및 변상금, 국도비보조금 등” 이며,

- 안 제3조에서 세출은 “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,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등” 으로 규정되어 있고,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,
- 안 제5조에서 “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” 라고 강제 규정을 두었는데

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” 라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두지 않고 강제규정을 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- 그리고 「지방재정법」 에서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 세입·세출이 있을 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, 우리 군의 국·공유재산의 세입 규모를 보면
 - 2006년도에 대부료, 변상금, 매각 등 세입이 431,406천원이며, 2007년도에 대부료, 변상금, 매각 등 세입이 281,841천원인데,

- 공유재산의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읍사무소 신축, 보건지소 등 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된 예산이 4,974,000천원 이고, 200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공유재산관리에 소요 되는 세출예산은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, 청사 천정 교체 작업 등에 2,251,542천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음.
- 이러한 것을 볼 때 공유재산의 대부료, 매각대금 등 자체 수입원이 빈약하여 세출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지 않고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임.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서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이 있을 때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세입규모를 볼 때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원이 빈약 하여 회계가 형식으로 운영되거나 부실화 될 우려가 있고, 또한 군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- 특별회계의 수입원이 빈약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없이는 공유재산의 취득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매년 어느 정도의 전입금액과 몇 년 동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

- 또한 전국 도·시·군·구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공유 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·군이 4개 시·군 (경기도 김포시, 남양주시, 안성시, 강원도 평창군) 뿐 인데, 우리 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참고자료

○ 관련법령 발췌

[지방재정법]

제9조 (회계의 구분)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

제43조 (예비비)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